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기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84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5.

발 의 자 : 이기현 · 임미애 · 한민수
김교홍 · 박홍근 · 이용우
김재원 · 소병훈 · 이주희
윤종균 · 김문수 · 김남근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조사의 지속성 및 체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.

이에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해당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, 전문성을 갖춘 조사원이 조사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1조의2 및 제90조제3항제1호 신설).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1조의2(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8조

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(이하 “인권실태조사”라 한다)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조사기간 중에 인권실태조사원(이하 “조사원”이라 한다)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.

1. 장애인 인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
2. 장애인학대 관련 업무를 하는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종사자
3. 장애인 인권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③ 조사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권보호 및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거

주시설의 장애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, 조사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이용자 또는 그 밖의 관계자를 면담하고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, 장소 등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⑤ 제4항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에 출입하려는 조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, 조사범위, 조사담당자,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.

⑥ 인권실태조사의 대상,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90조제3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3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인권실태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31조의2(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(이하 “인권실태조사”라 한다)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</u> <u>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조사기간 중에 인권실태조사원(이하 “조사원”이라 한다)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.</u> <u>1. 장애인 인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</u> <u>2. 장애인학대 관련 업무를 하는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종사자</u>

3. 장애인 인권 분야의 지식과
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③ 조사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
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권
보호 및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
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실태
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
애인거주시설의 장애인에게 필요한
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, 조
사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
출입하여 이용자 또는 그 밖의
관계자를 면담하고 조사와 관
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, 장
소 등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
수 있다. 이 경우 장애인거주시
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
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
협조하여야 한다.

⑤ 제4항에 따라 장애인거주시
설에 출입하려는 조사원은 그
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
기간, 조사범위, 조사담당자, 관
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
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
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

제90조(과태료) ①·② (생략)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u><신설></u> 1. (생략) 2. ~ 7. (생략) ④ (생략)	<u>주어야 한다.</u> ⑥ <u>인권실태조사의 대상,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 제90조(과태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. 1. <u>제3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인권실태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</u> <u>1의2.</u> (현행 제1호와 같음) 2. ~ 7.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
--	--